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2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22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5512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김정, 김준영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박명상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정상원

변론종결 2023. 4. 27.

판결선고 2023. 5.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5512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6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7. 16.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에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7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 B와 I에게 주주 출자금 정리 명목으로 기존 월 1,000만 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설령 위 초과 지급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이 사건 분사합의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승인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2) 설령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사합의계약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
- 3) 피고 B은 이 사건 분사합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확약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분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후속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이상, 피고 B이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상법 제374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분사합의계약과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나 분사의 범위 등이 서로 다르고, 잔류사업부가 보유하던 채권으로서 분사합의계약상 양도 대상이 아닌 일부 채권을 포괄영업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분사합의계약과 포괄영업양도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것이라거나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계약이 단순히 이 사건 분사합의계약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주주들이 이 사건 분사합의계약에 대한 승인으로써 사후에 체결될 포괄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승인까지도 한꺼번에 한다는 의사로 결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분사합의계약 이후 체결된 포괄영업양도계약에서 분사합의와는 다른 내용을 정한 경우에도 분사합의계약에 대한 승인으로써 영업양도에 대한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주주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영업양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나아가 특별결의를 얻도록 한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포괄영업양도계약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B이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이양희, 판사 김규동